

대전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나12436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0나124363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1. 5 선고 2019가단9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수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박기성

변론 종결2021. 10. 19.

판결 선고2022. 1. 25.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1. 5. 선고 2019가단9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체결한 증여계약을 119,715,96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19,715,9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체결한 증여계약을 284,236,87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4,236,8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액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위 판결을" 앞에 "양형부당을 이유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의 "마."항의 표를 아래 표로 고친다.

1	2011. 6. 30.	130,000,000원	100,000,000원	95,000,000원	2012. 4. 12. 이 사건 건물이 공동담보로 추가됨
2	2012. 4. 12.	186,000,000원	155,000,000원	155,000,000원	이 사건 건물과 공동담보
3	2014. 7. 3.	64,800,000원	54,000,000원	43,624,032원	"
합계	380,800,000원	309,000,000원	293,624,032원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그 채무의 사용처 및 물상보증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2) 앞서 본 바와 같이 C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의 각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그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며,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위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물상보증인인 피고가 채무자인 C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와 C이 부부 사이이고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였으나, 피고가 C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피고 또는 C의 경제적 부담 부분, 피고의 자력 유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발생의 목적이나 경위 및 대출금의 사용처, 피고가 물상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다.

③ C이 2018. 1. 6. 사망하였으나, 피고와 큰아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작은아들이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C의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법률상·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이 2,850,524,726원이고, 그에 가까운 2019. 12.경 E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인 이 사건 대출금 채무액이 293,624,03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제1심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9. 5. 8.경의 시가가 345,612,000원이라는 것이나, 갑 제6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에서 2019. 8. 1.경의 이 사건 토지 시가가 413,340,000원으로 감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두

감정의 기준시점, 수집된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의 대상 토지들과 평가 목적, 금액 등을 비교하여 보면,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413,34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수목과 관정, 담장 및 대문이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432,840,000원(=413,340,000원+수목 2,500,000원+관정 8,000,000원+담장 및 대문 9,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부합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413,340,000원에서 293,624,032원을 공제한 119,715,96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19,715,9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432,840,000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안분된 피담보채무 합계액 148,603,122원을 공제한 나머지 284,236,878원의 한도 내 손해행위 취소 및 그 가액배상을 구하나, 위에서 본 이유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이진

판사안영화

판사신순영

별지

1) 경기 양평군 F 도로의 C 소유 지분이 순번 1 근저당의 공동담보로, G. H 각 도로의 C 소유 각 지분이 순번 2 근저당의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등기기록 과다로

말소되었다.